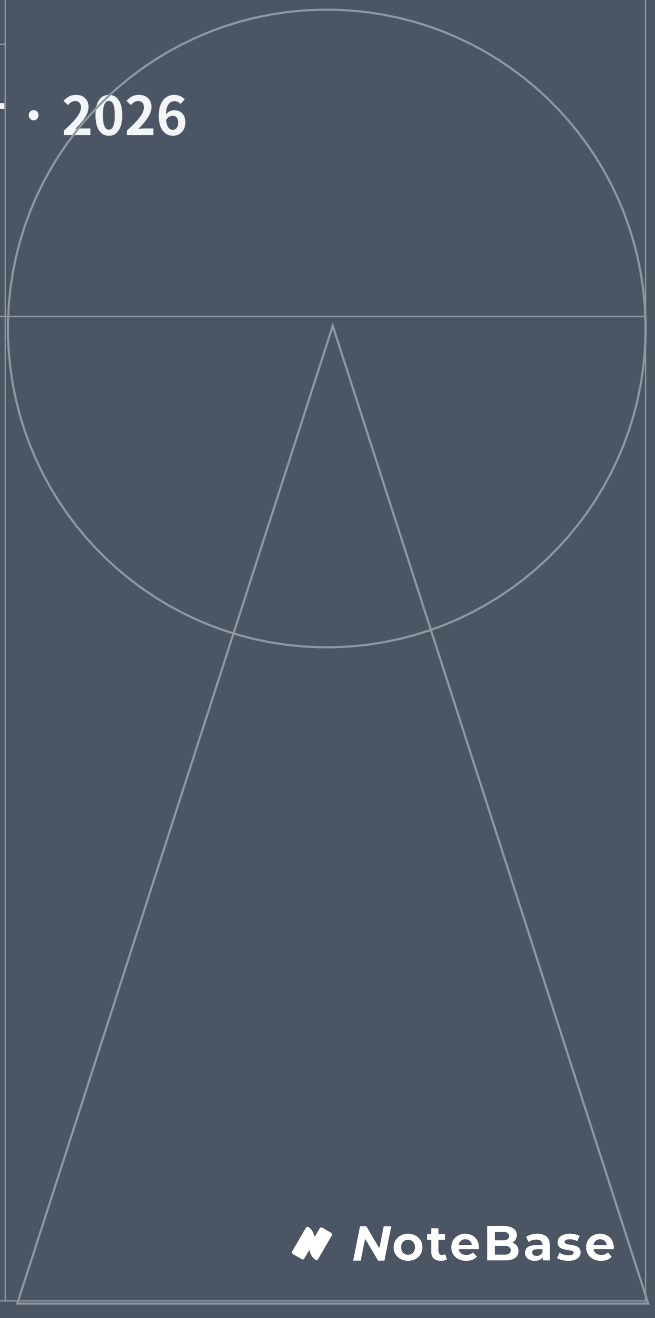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6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6

문 1. 일반목적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② 경영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③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경제 상황이나 산업 전망 등 다른 출처의 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재무보고서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기업의 경제적 현상을 모두 확정된 수치로 정확하게 서술할 수는 없으며, 개념체계는 이러한 추정·판단·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제시한다.

② O: 경영진도 기업의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기업 내부에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③ X: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며, 제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고쳐야 한다. 이용자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와 함께 일반적인 경제 상황과 전망, 산업 및 기업 전망 등 다른 출처의 관련 정보도 고려해야 한다.

④ O: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는 보고기업에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들은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하므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가 된다.

NoteBase

문 2.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④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평가충당금을 차감해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는 차감항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면 거래의 인식·측정·표시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 그 내용을 공시하거나 주석·보충 자료로 설명하더라도 **회계정책 자체의 부적절함은 해소되지 않는다**. 적절한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② O: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각각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의로 상계하면 각 항목의 규모가 가려져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기 어려워지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③ O: 동일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 비용의 상계가 **거래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순액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주된 수익 창출 활동에 부수하는 비유동자산 처분거래에서는 처분대가에서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표시한다. 이는 거래 결과인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④ X: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는 차감항목이다. 이를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은 **자산의 순장부금액을 측정하는 것**이며, 자산과 별개의 부채를 서로 상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상계표시에 해당한다'는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기초 선수임대료는 ₩30,000이며, 당기 임대료 현금수취액은 ₩50,000이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임대료수익이 ₩40,000이라면 기말 선수임대료는?

① ₩30,000

② ₩40,000

③ ₩50,000

④ ₩6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선수임대료는 미리 받은 임대료 중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다. 기초 잔액 30,000원에 당기 현금수취액 50,000원을 더하고 당기 임대료수익 40,000원을 차감하면 기말 선수임대료는 40,000원이다.

계산 과정

선수임대료는 임대료를 미리 받았지만 아직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으로, 부채에 해당한다.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는 선수임대료에 더하고, 당기에 벌어들인 임대료수익은 선수임대료에서 차감하여 **미리 받은 금액 중 기말까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잔액**을 구한다.

기초 선수임대료 30,000원은 전기까지 이미 받았으나 기초 시점에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다. 여기에 당기 임대료 현금수취액 50,000원을 더하면 30,000 + 50,000 = 80,000원이다. 이는 당기에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기말 선수임대료로 남을 금액의 합계이다.

이 중 당기 임대료수익 40,000원을 차감하면 기말 선수임대료는 80,000 - 40,000 = 40,000원이다. 이는 ②의 4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다음은 (주)한국의 보험과 관련된 거래이다.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보험료와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선급보험료는?

◯ 20×1년 9월 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보험료 ₩96,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20×2년 9월 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보험료 ₩84,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① 보험료: ₩28,000, 선급보험료: ₩56,000
② 보험료: ₩28,000, 선급보험료: ₩64,000
③ 보험료: ₩92,000, 선급보험료: ₩56,000
④ 보험료: ₩92,000, 선급보험료: ₩64,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보험료는 **20×2년에 보험 보장을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전년도 계약분 64,000원과 당해 연도 계약분 28,000원을 합한 92,000원이다. 연말 이후의 보장기간에 해당하는 56,000원은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으로 남는다.

계산 과정

보험료는 현금 지급일이 아니라 **보험 보장을 받는 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1년분 보험료를 12개월에 걸쳐 월할 배분하고, 아직 보장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액은 선급보험료로 처리한다.

20×1년 9월 초 지급한 96,000원: 보장기간은 20×1년 9월부터 20×2년 8월까지이다. 이 중 20×2년 1~8월의 8개월분은 전년도에 미리 지급했더라도 **20×2년의 비용**이다. 해당 금액은 $96{,}000 \times \frac{8}{12} = 64{,}000$원이다. 이 계약은 20×2년 8월에 종료되므로 20×2년 말에는 남는 선급보험료가 없다.

20×2년 9월 초 지급한 84,000원: 보장기간은 20×2년 9월부터 20×3년 8월까지이다. 20×2년에 보장을 받은 기간은 **9~12월의 4개월**이므로, 당기 비용은 $84{,}000 \times \frac{4}{12} = 28{,}000$원이다.

20×2년 말 선급보험료: 두 번째 계약의 보장기간 중 **20×3년 1~8월의 8개월**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선급보험료는 $84{,}000 \times \frac{8}{12} = 56{,}000$원이다.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보험료는 64,000 + 28,000 = 92,000원이고,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선급보험료는 56,000원이다. 이 두 금액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일시상환)를 발행하고 발행가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20×1년 말 이자비용 ₩1,100을 인식한 후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이 ₩400인 경우 20×1년 초 사채 발행 시 분개로 옳은 것은?

① (차) 현금 ₩9,400 (대) 사채 ₩10,000
(차) 사채할인발행차금 ₩600

② (차) 현금 ₩9,500 (대) 사채 ₩10,000
(차) 사채할인발행차금 ₩500

③ (차) 현금 ₩9,600 (대) 사채 ₩10,000
(차) 사채할인발행차금 ₩400

④ (차) 현금 ₩9,700 (대) 사채 ₩10,000
(차) 사채할인발행차금 ₩3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자비용 1,100원과 현금이자 1,000원의 차이인 100원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다. 발행 시 할인액은 연말 잔액 400원에 상각액을 더한 500원이므로, 현금 수취액은 **9,500원**이다.

계산 과정

1. 현금이자 계산: 매년 말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금액에 표시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20×1년 초에 발행했으므로 첫해의 현금이자는 10,000원 × 10% = 1,000원이다.

2.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계산: 사채를 할인발행하면 액면금액보다 적게 받은 금액도 사채의 존속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자비용은 현금이자와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합계이다. 첫해 상각액은 1,100원 − 1,000원 = 100원이며, 이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이 감소**한다.

3. 발행 시 할인액과 발행가액 계산: 연말 잔액 400원은 첫해 상각액 100원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이다. 발행 시 할인액을 구하려면 **연말 잔액에 당기 상각액을 더한다**. 발행 시 할인액은 400원 + 100원 = 500원이고, 발행가액은 10,000원 − 500원 = 9,500원이다.

4. 발행 시 분개: 수취한 현금 9,500원은 차변에, 만기에 상환할 액면금액 10,000원은 사채의 대변에 기록한다. 차액 500원은 사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하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차변**에 기록한다.
(차) 현금 9,5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500원 / (대) 사채 10,000원
이 분개는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6.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단, 현금배당은 당기 중에 결의 및 지급되었다)

◯ 기초자산 ₩200,000 ◯ 기초부채 ₩100,000
◯ 기말자산 ₩300,000 ◯ 기말부채 ₩100,000
◯ 현금배당 ₩150,000

① ₩100,000
② ₩150,000
③ ₩200,000
④ ₩25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초보다 기말자본이 100,000원 증가했지만, 당기 중 현금배당으로 자본이 150,000원 감소했다. 따라서 **자본증가액에 현금배당액을 더한** 250,000원이 당기순이익이다.

계산 과정

기초·기말자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기초자본은 200,000 − 100,000 = 100,000원이고, 기말자본은 300,000 − 100,000 = 20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중 자본의 순증가액은 200,000 − 100,000 = 100,000원이다.

현금배당의 반영: 현금배당은 **비용이 아니라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거래**이므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자본을 직접 감소시킨다. 이 문제에서는 배당 150,000원이 당기 중 결의·지급되었으므로 기말자본에 그 감소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당기순이익 계산: 자료에 증자 등 다른 자본 변동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자본의 순증가액은 당기순이익에서 현금배당액을 뺀 금액이다. 배당으로 줄어든 자본을 다시 더하면 당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은 100,000 + 150,000 = 25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20×1년 7월 초 기계장치(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50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3년 6월 말 해당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현금을 수취하였으며, 처분손실 ₩60,000을 인식하였다. (주)한국이 기계장치 처분 시 수취한 현금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① ₩140,000

② ₩240,000

③ ₩340,000

④ ₩44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처분 시점까지 24개월간 감가상각한 장부금액은 300,000원이다. 처분손실은 장부금액보다 적게 받은 금액이므로, 수취 현금은 **장부금액에서 처분손실을 차감**한 240,000원이다.

계산 과정

연간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한다. 따라서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500{,}000-0}{5}=100{,}000$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 월할 상각하므로 **사용한 개월 수**를 반영한다. 20×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20×2년 12개월, 20×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로 총 24개월이다. 처분 시점까지 누적된 감가상각비는 $100{,}000\times\frac{24}{12}=200{,}000$원이다.

처분 시 장부금액: 원가모형에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장부금액은 500,000 − 200,000 = 300,000원이다.

수취 현금: 처분손실 60,000원은 **수취 현금이 장부금액보다 60,000원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취 현금은 300,000 − 60,000 = 240,000원이며,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을 ₩20,000에 취득하였으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건물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22,000이다. 동 건물에 대해 (주)한국이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을 각각 적용한 경우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① 원가모형: ₩2,000 증가, 공정가치모형: 영향없음

② 원가모형: ₩2,000 증가, 공정가치모형: ₩2,000 감소

③ 원가모형: ₩4,000 감소, 공정가치모형: 영향없음

④ 원가모형: ₩4,000 감소, 공정가치모형: ₩2,000 증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원가모형은 **감가상각비 4,000원**을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4,000원 감소한다. 공정가치모형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상승액 2,000원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당기순이익이 2,000원 증가한다.

계산 과정

원가모형: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을 측정한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연초에 취득했으므로 월할 상각기간은 12개월이며, 20×1년 감가상각비는 (20,000 - 0)/(5)·(12)/(12)=4,000원이다. 이 금액이 비용으로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은 4,000원 감소한다. 기말 공정가치가 22,000원으로 올라도 원가모형에서는 그 상승분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을 기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 모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원가 20,000원과 기말 공정가치 22,000원의 차이인 22,000 − 20,000 = 2,000원이 평가이익이며, 당기순이익은 2,000원 증가한다.

원가모형의 4,000원 감소와 공정가치모형의 2,000원 증가를 함께 제시한 선택지는 ④이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상품매매에 대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이 기말상품재고를 과대계상하였다면,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매출원가: 과소평가, 당기순이익: 과대평가

② 매출원가: 과소평가, 당기순이익: 과소평가

③ 매출원가: 과대평가, 당기순이익: 과대평가

④ 매출원가: 과대평가, 당기순이익: 과소평가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구한다. 기말상품재고를 과대계상하면 **매출원가는 과소평가**되고, 비용이 적게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은 과대평가**된다.

공통 해설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에 남아 있는 상품의 재고액을 확정하고,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순매입액의 합계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구한다. 이는 판매 가능한 상품의 원가를 판매된 부분인 매출원가와 남아 있는 부분인 기말상품재고로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재고로 남긴 원가가 많아질수록 비용으로 처리할 매출원가는 줄어든다**.

다른 항목에 오류가 없다면 기말상품재고를 과대계상한 금액만큼 매출원가가 적게 계상된다.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차감하는 비용이 적어지므로 이익은 실제보다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매출원가가 과소평가되고 당기순이익이 과대평가된다.

NoteBase

문 10. 원가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가배부기준은 인과관계기준에 의해서만 설정되어야 한다.

② 원가배부는 발생한 원가를 원가대상에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대상에 할당해야 하는 직접원가를 대상으로 한다.

③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원가를 단일배부기준에 의하여 개별 제품에 배부하면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필요가 없다.

④ 이중배부율법(dual rate method)은 지원부문의 원가를 다른 부문에 배부할 때 지원부문의 고정원가는 사용부문의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지원부문의 변동원가는 사용부문의 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보조부문원가까지 포함한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원가를 하나로 모으면, **단일배부기준으로 제품에 바로 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별로 나누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X: 인과관계기준은 원가를 발생시킨 요인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이다. 원가배부기준은 인과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수혜기준·부담능력기준·공정성기준**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수혜기준은 제공받은 효익에 따라, 부담능력기준은 원가를 부담할 능력에 따라, 공정성기준은 당사자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방식이다.

② X: 원가배부의 대상은 직접원가가 아니라 **간접원가**이다. 원가대상은 원가를 측정하려는 제품·부문 등을 뜻한다. 직접원가는 특정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하여 부과하고, 간접원가는 직접 추적하기 어렵거나 추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서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③ O: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원가를 단일배부기준으로 배부할 때는 보조부문원가와 제조부문 자체의 제조간접원가를 **하나의 원가집합으로 모아** 제품에 배부한다. 제조부문별 원가를 따로 계산하여 각 부문의 배부율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먼저 배부할 필요가 없다. 보조부문원가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전체 원가에 포함하여 제품에 배부하는 것이다.

④ X: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배부기준을 서로 바꾸어 설명했다. 이중배부율법은 지원부문원가를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으로 배부한다. **고정원가는 최대사용가능량이나 예산사용량**을 기준으로,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고정원가는 용역을 제공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고, 변동원가는 실제로 소비한 용역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원가의 배부기준을 구분한다.

NoteBase

문 11.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기말재공품 완성도는? (단, 공손과 감손은 없다)

◯ 기초재공품 없음 ◯ 직접재료원가 ₩850,000
◯ 당기완성품 5,000단위 ◯ 가공(전환)원가 ₩800,000
◯ 기말재공품 1,000단위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300

① 20%
② 30%
③ 40%
④ 5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총제조원가를 단위당 원가로 나눈 완성품환산량은 5,500단위이며, 완성품 5,000단위를 빼면 기말재공품 몫은 500단위이다. 실제 기말재공품 1,000단위가 완성품 500단위에 해당하므로 **완성도는 50%**이다.

계산 과정

1. 계산 기준과 총제조원가
완성품환산량은 실제 생산수량에 완성도를 반영하여 완성품 기준으로 나타낸 수량이다. 이 문제에서는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가 모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두 원가의 완성도가 같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기초재공품이 없으므로 배분할 총제조원가는 당기에 발생한 850,000 + 800,000 = 1,650,000원이다.

2.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총제조원가를 전체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전체 완성품환산량은 $\frac{1,650,000}{300} = 5,500$단위이다. 당기완성품 5,000단위는 완성도가 100%이므로 완성품환산량도 5,000단위이다. 공손과 감손이 없으므로 나머지 5,500 − 5,000 = 500단위가 **기말재공품에 해당하는 완성품환산량**이다.

3. 기말재공품 완성도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은 실제 수량에 완성도를 곱한 값이므로, 완성도는 완성품환산량을 실제 수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기말재공품은 실제로 1,000단위가 있으므로 완성도는 $\frac{500}{1,000} \times 100 = 50\%$이다. 이는 ④의 50%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부원가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은 생산량에도 영향을 받는다.

② 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만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③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는 전부원가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서의 영업이익보다 항상 크다.

④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 이외의 제조원가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경영자로 하여금 제품 재고를 최소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업 개시연도라도 생산한 제품을 모두 판매하면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은 **같다**.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더 커지는 것은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일부가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는 경우이므로, '항상 크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부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뿐 아니라 고정제조간접원가도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이 원가는 제품이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배분된 금액은 재고자산에 남는다. 따라서 판매량이 같더라도 생산량이 늘어 재고가 증가하면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일부가 재고자산으로 이월**되어 당기 비용이 줄고 영업이익이 커질 수 있다.

② O: 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변동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재고에 포함하여 다음 기간으로 넘기지 않는다.
판매비와관리비도 제품원가가 아니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X: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는 기초재고가 없지만, 이것만으로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항상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생산한 제품을 모두 판매하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이 전부원가계산에서도 당기 매출원가로 처리되므로 **두 방법의 영업이익은 같다**.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 남아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일부가 기말재고에 포함될 때 전부원가계산의 당기 비용이 더 적어져 영업이익이 더 커진다. 따라서 '항상 크다'는 '기말재고에 이월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있으면 더 크고, 없으면 같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보고,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등 **나머지 제조원가는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제품을 더 생산하여 재고를 늘려도 직접노무원가나 제조간접원가를 재고자산에 포함해 당기 비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익을 높이기 위한 과잉생산 유인이 줄어 제품 재고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결합생산공정을 통해 결합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으며,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에 의해 결합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당기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이익극대화를 위한 추가가공 의사결정 시 얻을 수 있는 최대 증분이익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과정에서 재공품, 공손 및 감손은 없다)

구분	결합원가	분리점에서의 판매가격	추가가공 원가	추가가공 후 판매가격
제품A		₩ 60,000	₩ 3,000	₩ 65,000
제품B	₩ 20,000		₩ 2,000	₩ 31,000
제품C			₩ 5,000	₩ 80,000
합계	₩ 100,000	₩ 150,000	₩ 10,000	₩ 176,000

① ₩ 15,000

② ₩ 16,000

③ ₩ 17,000

④ ₩ 26,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추가가공 여부는 **증분수익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뺀 금액**으로 판단하며, 이미 발생한 결합원가는 제외한다. A와 C만 추가가공하면 분리점에서 모두 판매할 때보다 이익이 17,000원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추가가공 의사결정에서는 분리점에서 바로 판매하는 경우와 추가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결합원가는 두 경우 모두 발생하므로 **추가가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원가**이다. 따라서 제품별 증분이익은 '추가가공 후 판매가격 − 분리점 판매가격 − 추가가공원가'로 계산하며, 양수인 제품만 추가가공한다.

B의 분리점 판매가격: 결합원가는 분리점의 상대적 판매가치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따라서 B의 결합원가 배분액 20,000원이 총결합원가 10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B의 분리점 판매가격이 전체 15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 B의 분리점 판매가격은 $150{,}000 \times \frac{20{,}000}{100{,}000} = 30{,}000$원이다.

C의 분리점 판매가격: 분리점 판매가격 합계에서 A와 B의 금액을 빼면 150,000 − 60,000 − 30,000 = 60,000원이다. 재공품·공손·감손이 없으므로 표의 금액을 그대로 비교한다.

A의 추가가공: 판매금액 증가분은 65,000 − 60,000 = 5,000원이다. 여기서 추가가공원가 3,000원을 빼면 증분이익은 2,000원이므로 추가가공한다.

B의 추가가공: 판매금액 증가분은 31,000 − 30,000 = 1,000원이다. 추가가공원가 2,000원을 빼면 증분이익은 −1,000원이므로 **분리점에서 바로 판매**한다. 이때 추가가공에 따른 이익 감소를 피할 수 있다.

C의 추가가공: 판매금액 증가분은 80,000 − 60,000 = 20,000원이다. 추가가공원가 5,000원을 빼면 증분이익은 15,000원이므로 추가가공한다.

최대 증분이익: A와 C만 추가가공하므로 2,000 + 15,000 = 17,000원이며, ③의 금액에 해당한다. 이는 세 제품을 모두 분리점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비교한 이익 증가액이다.

NoteBase

문 1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②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③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④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정답 3번

①

퇴직금 지급규정, 산정내역 및 회계연도 중 실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②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②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미수세금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①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NoteBase

③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우발상황의 내용과 그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우발상황)
②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④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이 더 합리적이면 개별법·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NoteBase

문 1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제표 작성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되, **내부거래를 상계하여 작성**한다. 상계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리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개정 2011.5.20>

②

유형별 재무제표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되, **같은 유형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개정 2011.5.20>

NoteBase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에서는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밖의 회계실체와 거래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1.5.20>

④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변경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④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5.20, 2021.1.7>

NoteBase

문 16. 충당부채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한다.

②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③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④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충당부채의 할인율은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이미 반영한 위험은 할인율에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하면 의무 이행에 필요한 예상 지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이때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부채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므로, '세후 이율'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또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이미 반영한 위험은 할인율에 **다시 반영하지 않는다**. 동일한 위험을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모두 반영하면 위험 조정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② O: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지출액이나 지급 시기 등에 영향을 주는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다만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당부채를 의도적으로 과대계상해서는 안 된다**. 위험을 고려한다는 것은 가능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지, 무조건 가장 큰 지출액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한다면 합리적으로 지급할 금액**이다. 실제 이행일이 미래이더라도 측정의 기준 시점은 보고기간 말이다. 그 시점에 실제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전하기 어렵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합리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추정한다.

④ O: 현재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은 그 발생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충당부채 측정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기술 변화로 이행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그 효과를 고려한다. 단순히 비용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액을 낮출 수는 없다.

NoteBase

문 17.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단, 회전율 계산 시 재고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 매출총이익률 20% ◯ 당기 매출액 ₩800,000
◯ 기말 재고자산 ₩200,000 ◯ 당기 재고자산 순매입액 ₩720,000

① 2.5회
② 3회
③ 3.5회
④ 4회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매출총이익률 20%를 반영한 매출원가는 640,000원이고, 기초·기말 평균 재고자산은 160,000원이므로 회전율은 4회이다.

계산 과정

재고자산 회전율은 당기에 평균 재고자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재고가 판매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재고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므로 분자에도 **매출원가**를 사용한다. 계산식은 재고자산 회전율=매출원가평균 재고자산이다.

1.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800,000 × 20% = 160,000원이고, 매출원가는 800,000 − 160,000 = 640,000원이다.

2. 기초 재고자산: 기초 재고자산에 당기 순매입액을 더한 금액은 판매된 재고의 원가와 기말에 남은 재고의 원가로 나뉜다. 따라서 기초 재고자산+720,000=640,000+200,000의 관계가 성립한다. 기초 재고자산은 640,000 + 200,000 − 720,000 = 120,000원이다.

3. 평균 재고자산: 문제에서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값**을 이용하도록 했으므로, 평균 재고자산은 $\frac{120{,}000 + 200{,}000}{2} = 160{,}000$원이다.

4. 회전율: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면 $\frac{640{,}000}{160{,}000} = 4$회이다. 이는 당기에 평균 재고자산의 4배에 해당하는 원가의 재고가 판매되었다는 뜻이며, ④의 4회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은 20×1년 중 A사 주식 10주를 주당 ₩1,000에 취득하였으며, 주당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3년 초 A사 주식을 주당 ₩980에 모두 처분하였다. A사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한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취득 관련 비용은 없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 1,030/주	₩ 950/주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2년 말 보유 시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20×2년 말 보유 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20×3년 초 처분 시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20×3년 초 처분 시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한 주식은 처분할 때도 **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20×3년 초 가격 상승분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므로, 처분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0×2년의 평가손익은 **취득가격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말 공정가치**와 비교한다. 주당 공정가치가 20×1년 말 1,030원에서 20×2년 말 950원으로 하락했으므로 평가손실은 (1,030 − 950) × 10주 = 800원이다. 따라서 20×2년 당기순이익은 800원 감소한다.

② O: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한 주식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20×2년의 공정가치 하락으로 생긴 평가손실 800원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③ O: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대금과 처분 직전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20×2년 말 장부금액은 950 × 10주 = 9,500원이고, 20×3년 초 처분대금은 980 × 10주 = 9,800원이다. 차액 300원이 이익으로 반영되므로 20×3년 당기순이익은 300원 증가한다.

④ X: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한 주식은 20×3년 초 처분가격 980원과 직전 연도 말 공정가치 950원의 차이인 (980 − 950) × 10주 = 300원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또한 **처분하더라도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충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④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는 **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이 사실만으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기간에 걸친 수행의무 충족기준은 ①·③·④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③ 안에 제시된 두 조건은 함께 충족해야 한다.

① O: 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생기는 효익을 **수행과 동시에 얻고 소비**하면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충족한다. 예를 들어 매일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고객이 청소가 이루어질 때마다 효익을 얻고 소비하므로, 마지막 날에 모든 효익이 한꺼번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② X: 자산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는 것은 **한 시점의 통제 이전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를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충족하는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기간에 걸친 충족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그 시점을 판단할 때 고려한다.

③ O: **대체 용도가 없다는 조건과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충족한다. 대체 용도가 없다는 것은 계약상 또는 실무상 제약 때문에 기업이 그 자산을 다른 고객 등에게 쉽게 돌려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미 완료한 수행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어야 하므로, 대체 용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O: 기업이 자산을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동안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면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충족한다. 통제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남은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고객이 만들어지는 재공품을 이미 통제하므로 완성품을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통제가 이전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의 20×1년 보통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7월 1일 유상증자 시 주주우선배정방식에 따라 주당 ₩500으로 발행되었다. 이는 유상증자 직전의 주당 공정가치 ₩1,000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20×1년 (주)한국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로 계산한다.)

◯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 9,000주
◯ 7월 1일 보통주 유상증자 2,000주
◯ 12월 31일 유통보통주식수 11,000주

① 10,250주
② 10,450주
③ 10,750주
④ 11,000주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주주우선배정 방식의 할인발행에는 **무상증자 요소**가 있으므로 증자 전 주식수에 조정계수 1.1을 적용한다. 상반기는 조정된 9,900주, 하반기는 11,000주를 각각 6개월씩 반영하여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0,450주가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공정가치 1,000원보다 낮은 500원에 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무상증자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요소는 그에 상응하는 자원 유입 없이 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이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수를 소급 조정**한다.

이론적 권리락 주가는 증자 직전 주식의 공정가치 총액에 증자대금을 더하고 증자 후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기존 주식의 공정가치 총액은 9,000 × 1,000 = 9,000,000원이고, 증자대금은 2,000 × 500 = 1,000,000원이다. 따라서 증자 후 총가치는 10,000,000원, 총주식수는 11,000주이므로 이론적 권리락 주가를 P라 하면 $P = \frac{10,000,000}{11,000}$원이다.

조정계수는 **증자 직전 주당 공정가치를 이론적 권리락 주가로 나눈 비율**이다. 위에서 구한 P의 정확한 값을 적용하면 $\frac{1,000}{P} = 1.1$이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주식수는 9,000 × 1.1 = 9,900주로 조정한다. 이는 실제 상반기 발행주식수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무상증자 요소를 반영해 계산 기준을 맞춘 주식수이다.

7월 1일 증자이므로 상반기와 하반기는 각각 6개월이다. 연간 가중평균에 반영되는 상반기 주식수는 $9,900 \cdot \frac{6}{12} = 4,950$주이고, 하반기 주식수는 $11,000 \cdot \frac{6}{12} = 5,500$주이다. 두 기간을 합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4,950 + 5,500 = 10,450주이며, ②의 주식수와 일치한다.

NoteBase